

의안번호	제 31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월 일 (제 277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충청북도교육감
발의연월일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	-----

발의연월일 : 2009. 1. 5.

발 의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850,000원에서 월 2,180,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1항)
-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함.

참고자료

- 가.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나.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850,000원”을 “월 2,1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85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월 2,180,000원...</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의 장 부의장	현행 과 같음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위 원	현행 과 같음						
비교 : 1. (생략) 2. (생략) 3. (신설)								비교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한 금액 범위
- 월정수당 : 월 218만원(연 2,616만원)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위원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위원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text{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